

경기이주공대위

수 신 제 언론사
발 신 경기이주공대위
제 목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6개월 단식 후 자살시도
날 짜 2016. 10. 31
보도날짜 2016. 11. 01201

보 도 협 조 요 청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6개월 단식 후 자살시도**”

- 보호소 내 자살 시도 노동자, 보호소는 모르쇠
- 20대 청년의 코리아드림 자살시도로 마무리 되나.
- 보호 없는 외국인 보호소, 사람이 죽어간다.

※ 기자회견 일시·장소 : 11.1(화) 오전 11시, 수원출입국사무소 정문

문의 : 아시아의 친구들 ***.****.**** / 수원이주민센터 ***.****.****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경기이주공대위는 올해 7월 ‘아시아의 친구들’을 통하여 오먼 씨의 상담사례에 대해서 알게 된 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보호소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보호소에서는 오먼 씨와 관련된 책임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다고 회피하였다. 그러던 중 끝내 오먼씨가 자살시도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3. 이에 경기이주공대위는 11월 1일(화) 오전 11시 수원출입국사무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경기이주공대위는 10월25일 화성보호소 내에서 발생한 보호외국인 자살시도에 대해 보호소의 관리감독소홀 및 후속조치 부실에 대해 규탄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또한 자살시도 외국인이 이미 지난4월부터 단식을 해 오는 등 지속적으로 고충을 호소하고 문제해결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방치해온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규탄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단속과 구금 그리고 추방 일변도의 미등록이주자 대책에 대해 규탄한다.

경기이주공대위

4. 보도 내용

10월 25일 보호소의 다른 외국인들에 의해 보호소에서 목을 맨 오먼씨가 발견되었다. 자살 후 의료진이 왔으나 4시간동안 정상적인 의식을 찾지 못한 오먼 씨를 외부 후송도 하지 않고, 주사처방만 하고 돌아갔다. 다음 날 다시 만난 오먼씨는 목 주위에 붉은 자국을 남긴 채로 자살하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오먼씨가 자살하게 된 장소는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인 외국인보호소이다. 최근 외국인을 보호해준다는 이 화성외국인보호소 안에서 오먼씨는 희망의 끈을 잃은 채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보호는 작은 방에서 10명가량과 함께 살며, 마음대로 나갈 수 없고, 아침에는 빵만 주기 때문에 밥을 먹고 싶으면 전날 저녁을 남겨 아침에 찬 밥을 먹어야 한다. 내가 아플 때 바로 병원을 갈 수 없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멀리서 온 지인들을 투명벽이 가로 막힌 방에서 전화기로 이야기를 하다가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을 보고 보내야 한다. 일 년간을 보호의 명목으로 구금하고 있다.

2003년에 한국에 산업연수생제도로 오신 오먼씨는 한 달 반 만에 기숙사 청소 중 눈에 유리가 들어가 눈을 다쳐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그 기숙사 청소는 하지 않으면 해고당하는 매일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이었다. 2005년 금속가공업무로 배정받았으나 금속 파편이 눈에 들어가 업무 변경을 요청을 했지만 해고를 당했다. 그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건설현장 등을 전전하였다.

2006년에 산재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미등록이 되어 일을 하던 중 2008년 단속이 되어 보호소에 구금되었다. 단속이 될까 눈 수술을 못하던 오먼씨는 눈수술을 하기 위해 보증금 500만원을 내고 일시보호해제가 되었다. 그 동안 한국에서 벌었던 돈으로 보증금을 보호소에 내고, 남은 돈으로 눈 수술을 준비하던 중, 고향에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26살 아들이 한국에 가자마자 눈을 실명하고, 그래도 돈 벌겠다며 미등록으로 일하다 감옥(보호소는 감옥의 형태와 같아서 보통 감옥이라 부른다)에 갔다는 소식으로 충격을 받아 돌아가셨다. 오먼씨는 자신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눈 수술로 모아두었던 돈을 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야 했다. 장례는 가보지도 못했다. 다시 한국에 온 처음부터 돈을 벌어야 했다.

2015년 8월 다시 구금된 오먼씨는 이 상황으로는 억울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한국에서 다친 눈, 전혀 보상받지 못한 채 갖게 된 장애, 업무변경요청으로 해고 되어 미등록신세가 된 처지, 아버지의 죽음, 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을까? 눈치료와 장애보상금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일시해제를 4차례 시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하여 올 초에 단식을 시작하였다. 오먼씨는 20대 청년 때 코리아드림을 꿈꾸었던 한국에서 40살의 나이에 자살시도를 하게 되었다.

경기이주공대위

※ 별첨 1 : 기자회견 기획안

○ 제목 :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 중인 이주노동자 석방촉구 기자회견
'보호 없는 외국인 보호소, 사람이 죽어간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면 씨에 대한 구금을 해제하라!'

○ 일시 : 11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

○ 주최 : 경기이주공대위

○ 취지와 목적

- 지난10월25일 화성보호소 내에서 발생한 보호외국인 자살시도에 대해 보호소의 관리 감독소홀 및 후속조치 부실에 대해 규탄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 자살시도 외국인이 이미 지난4월부터 단식을 해오는 등 지속적으로 고충을 호소하고 문제해결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방치해온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규탄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 단속과 구금 그리고 추방 일변도의 미등록이주자 대책에 대해 규탄한다.

○ 기자회견 순서

- 여는말 (사회자)

- 사건내용 및 경과보고

- 규탄발언1

- 규탄발언2

- 규탄발언3

- 기자질의응답

- 성명서 낭독

- 구호

경기이주공대위

※ 별첨 2 : 오먼 씨 사건 경과보고

- 1976년 우즈베키스탄 출생 (현재 만39세)
- 2003년 4월 산업연수생(D-3)비자로 입국하여 경북 고령 소재 S금속에 입사하여 근무
- 6월 기숙사에서 청소를 하며 식탁을 옮기던 중 유리가 깨져 오른쪽 눈을 다침. 두 차례 수술을 하였으나 결국 다친 눈은 실명 되었음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수술에 대해서는 본인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함)
- 7월 회사복귀함. 금속가공업무가 금속파편이 눈으로 자꾸만 들어가서 힘든 까닭에 플라스틱 가공 업무로 변경하여 1년반 정도 근무
- 2005년 회사에서 갑자기 금속가공업무로 복귀 시킴. 이 문제로 관리자와 계속 갈등이 있었음. 관리자와의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회사에서 오먼 씨를 해고함. 그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건설현장 등을 전전함.
- 2006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음. (바로 불복하지 않아 이대로 확정)
- 2008년 1월 1차 단속되어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음. 눈치료 등을 이유로 보호일시해제됨.
- 2월 보호해제될 무렵 고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음. 눈치료 등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돈을 고향으로 보내고 가족들 부양을 위해 불법 체류 상태에서 취업활동. 눈치료와 장애보상 등 요구하기 위해 회사를 몇차례 찾아갔으나 경찰을 부른다고 협박하여 도망침
- 2015년 8월 2차 단속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됨. 눈치료와 장애보상금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일시해제 4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 되었음
- 2016년 4월 단식시작
- 7월 이주인권단체 <아시아의친구들>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 우연히 알게되어 이후 정기적으로 면회
- 9월 경기이주공대위에서 화성보호소측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오먼 씨건 논의
- 10월 19일 면회 때 물도 먹지 않겠다는 의사 밝힘
- 10월 25일 오먼 씨 보호실 내에서 자살 시도. 보호실 내에 다른 외국인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의료진 왔으나 외부후송 하지 않고 간단한 검진과 주사 처방만 하고 돌아감. 오먼 씨는 4시간 가량 정상적인 의식 찾지 못함
- 10월 26일 <아시아의친구들>에서 오먼 씨 면회함. 목 주위에 붉은 자욱 남아있었고 자살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였음

경기이주공대위

※ 별첨 3 : 성명서

성명서

사람이 죽어간다, 오먼 씨를 석방하라!

지난 10월25일 오후2시경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중이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오먼(39)씨가 목을 메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행히 다른 보호외국인이 비교적 빨리 발견하여 제지하는 바람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4시간 가량 정상적인 의식을 찾지 못하고 누워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의사가 간단한 검진과 주사처방만 시행한 후 오먼 씨를 그대로 방치해놓았다. 뇌나 다른 장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진단하는 등의 후속조치는 없었다.

오먼 씨는 이미 지난4월경 부터 단식과 절식을 오가며 보호소측에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사람이다. 그 결과 보호소에 들어오기전 105kg이 넘는 건장한 체구였던 오먼 씨는 현재 60kg까지 몸무게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에 의지해야 이동할 수 있는 상태이다.

오먼 씨는 사건이 있기 사흘전부터는 물조차 마시지 않는 극한 단식을 진행해왔다.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이미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오먼 씨의 말에 따르면 보호소측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오먼 씨는 지난 2003년에 산업연수생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경북 고령의 한 금속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이다. 코리안드림을 안고 부푼마음으로 들어온 한국생활이었지만 입사한지 한달 여만에 회사 기숙사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 회사는 두 차례의 수술을 해주긴 하였지만 그것이 끝이었다. 수술 후 회사로 복귀 하여 처음에는 금속파편이 튀지않는 다른 업무로 전환되었지만 일년 후 다시 금속가공업으로 보내졌다. 그 문제로 갈등을 빚다 오먼 씨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한쪽 눈이 안보이는 오먼 씨가 다른 곳에서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건설현장 등을 전전하던 그는 2008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해보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연관성이 없다며 산재승인을 거부하였다.

그 후에도 오먼 씨는 몇차례 회사를 찾아가 조금의 보상이라도 받고자 했으나 이미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오먼 씨에게 회사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으로 그를 쫓아

경기이주공대위

냈을뿐이다.

오먼 씨는 한국에서 다친 눈이고 고향 우즈벡에서는 의료기술이 높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수술해서 회복하고 싶어한다. 수술이 어렵다면 고향에 돌아가서 장애인으로 살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보상금을 받고 싶어한다. 물론 오먼 씨가 회사나 정부를 상대로 법적인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이미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이고, 제소기간이 만료되었다. 오먼 씨는 마지막으로 회사 사업주의 인간적인 선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는 오먼 씨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오먼 씨를 소위 ‘보호’ 하고 있다는 한국정부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오먼 씨를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보호’ 해주고 있는가? 생명이 점점 사그라들어가고 있는 오먼 씨를 붙잡아 놓고 무엇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오먼 씨를 이대로 강제추방해서 얻을 수 있는 당신들이 말하는 ‘국가이익’ 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먼 씨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해외에서 점점 늘어나는 것이 ‘국익’ 인가?

인권은 법적권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법이 있기 전에 인간이 있다. 회사의 기속사를 청소하는 것이 개인이익을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13년 전 일어난 그 사고로 한 젊은이가 시력을 잃고 일자리도 잃게 되었다. 그리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제 강제추방을 앞두고 있다. 그가 비록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얻게 된 이런 모든 불행 들을 그와 그가 태어난 나라의 사회에게 오롯이 책임지우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 법무부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1일

경기이주공대위 및 기자회견참석자 일동